##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78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박충권

우재준 • 배준영 • 최수진

박준태 • 김은혜 • 유용원

이상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법률 제 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3항 중 "농림"을 "농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 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조직) ①・② (생 략)	제107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③
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	
률, 복지, 방재, 문화, <u>농림</u> 등	농립,
도시 ·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